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21
------------------	-----

제출년월일 : '97. 9  
제 출 자 : 안산시장

## 1. 개정이유

-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가 '95. 6. 8 제정공포된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허가시 도로부터 조례의 일부제정 및 보완 요구가 있었고,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수산부류 개장시간을 여름의 경우 개장시간이 늦어 1시간 단축한것임.  
(안 제4조)
- 장려금의 지급시 출하장려금 지급대상을 출하자로 한정된 것을 '95. 7. 1부터 수집상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므로 수집상에 대하여도 창려금을 지급도록 하였으며(안 제14조)
- 도매법인이 장려금 지급시 장려금 운용계획과 지급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하였으나 장려금의 지급은 도매시장 법인이 입의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승인이 불필요하여 출하장려금 지급방법을 위탁상장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장려금 지급이 도매법인간 불균형으로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함.(안 제14조)
- 도매법인의 주주, 임직원의 겸업제한증 당해 도매법인 업무와 경합되는 업무에 수집상업무도 포함.(안 제16조)

- 도매법인의 해임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여부만 통보하면 되는것이므로 해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조정(안 제17조)
- 최소한의 경매사를 확보하도록 함에있어 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에 의한 당해연도 예상거래량에 의한다리를 추가함.(안 제20조)
- 중도매인의 최거거래금액을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상향 조정하고(안 제27조) 중도매법인의 시설사용 면적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7조의1)
- 중도매인의 허가취소 조항중 제5호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도매시장 이외의 곳에서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그판매를 수탁 또는 중재한 때”는 도매시장 이외의 곳에서의 영업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삭제함.(안 제32조)
- 수집상의 출하실적은 법인에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4호 삭제 (안 제37조)
- 수집상의 등록취소사항으로 1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때를 신설함. (안 제38조)
-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품목 및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에게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도매법인 상장에 외 품목 거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3조의 1)
- 출하자에 대한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하자가 최저가격 제시할 수 있는 규정신설(안 제44조의 1)
- 신속한 유통거래를 위한 대량입하품 및 표준규격 등을 우대조치로 “표준 규격품의 팔레트 사용 출하품” 제4호 신설(안 제45조)
- 경매절차의 보완을 위하여 차상경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함.(안 제48조)
- 출하자의 물품대금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을 때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규정을 신설, 도매법인에게 일정액 이상의 적립을 출하자에게 손실보전 규정신설(안 제51조의 1)

- 도매시장내 부속업소의 난립방지 및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속업소의 설립을 제한(안 제61조)
- 하여업무의 효과적 개선으로 출하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규정 신설(안 제74조의 1)
-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와 상품의 규격화 포장화 유도를 위한 쓰레기 유발 부담금 징수규정 신설(안 제75조의 1)
-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정착과 거래관계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고충처리센터 설치규정 신설(안 제77조의 1)
-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관리사무소의 기구인력 승인으로 위원회 구성인원 조정(안 별표 제4호 제3조)

###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경기도 유통 51160 - 1608('95. 10. 31)호 공문  
- 농림수산부 업무규정(안) '96. 5.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도매시장의 개장시간 중 수산부류 "04:30~12:00"를 "03:30~12:00"로 한다.

제9조 중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를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출하자 및 수집상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해당 금액을 위탁상장 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장려금이 도매법인간에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중 "판매업 또는 중도매업등"을 "판매업 또는 중도매업 등을 할 수 없으며 당해 도매시장에서 업무를 할 수 없다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경매사의 해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이하 생략한다.

제2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에 의한 당해년도 예상거래량)에 의한다.

제25조 제1항 중 "나"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장이 정하는 서류

제2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부 류	금 액
청 과 부 류	1,500만원 (법인 3,000만원)
수 산 부 류	1,500만원 (법인 3,000만원)

제2항 제4호 "6개월 연속미달 : 허가취소"를 "3개월 연속 무실적 및 6개월 연속미달 : 허가취소"로 하며,

제2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 1 (시설사용면적우대)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 법인과 중도매인 평가결과 우수자에 대해 시설사용면적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2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7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8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1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때

제43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 1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거래) ① 법 제28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20-1호 서식의 상장예외 품목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0-1 서식의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보증금 및 기타 상장예외 품목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4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 1(출하자의 최저가격 제시) ①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출하자가 최저가격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개시 이전에 제23-1호 서식의 출하자 최저판매가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최저가격 제시가 있을 경우 도매법인은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매법인이 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출하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판매방식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제시된 최저가격이하로 판매하였을 경우 차액은 법인이 지급한다.

제45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표준규격품의 팔레트사용 출하품

제48조중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매시장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차상경매를 실시하는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제51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 1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① 출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차이등 특별  
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일로부터 5일이내  
에 해당 도매법인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매법인은 제1항에 의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상장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3이상을  
적립하되 상장 수수료 기준은 전년도 실적으로 하고 전년도 실적이 없을 경우 사업계  
획에 의한 당해년도 거래 예상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적립금은 별도계좌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  
로 사용할 수 없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월말까지 그 지급액 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손실보전 신청이 있을 경우 도매법인은 판매당일의 동일품목, 동일품  
종,동일규격의 당해 시장가격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  
다고 인정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되 출자가 이에 이의가 있어 보전금  
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전한다.

⑤ 보전금 및 보전금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5조 제1항중 "당해 시설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으로"를 "당해 시설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으로(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하고"로 한다.

제61조 (부속업소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안에서는 도매법인, 중도매인등 거래관계자와  
도매시장 이용자를 위한 다음 각호에 제기한 이외의 업소를 둘수 없다.

1. 일반 및 휴게음식점, 약국, 매점(슈퍼), 축산물직판장
2. 양곡 및 가공식품 판매시설

제74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 1 (하역업무) ① 도매시장의 하역업무는 도매법인이 하역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하역인부를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역비는 전액 도매법인 부담으로 하여 출자하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제75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 1(쓰레기 유발 부담금) ① 개설자는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품목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동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다듬기·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쓰레기 유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은 다음과 같다.

품 목	요 율 (원 / 톤)
마 부 대 양	5,000
배 양	3,000
후 추 파	700
파	500
	400

③ 부담금은 출하물량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승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매시장내에서 다듬기·재포장 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발생 행위별로 개설자가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5만원으로 한다.

④ 부담금은 개설자가 부과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하 중지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설자는 출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설자는 부담금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출하자나 출하자 단체에 대한 포장재 구입, 포장재 구입 지원사업
2. 규격출하 촉진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구입, 교육연구사업
3. 기타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부담금의 부과, 징수, 사용 및 징수 제외대상에 관한 세부내용은 개설자기 정한다.

제7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7조의 1 (고충처리쎈타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고충처리쎈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쎈타는 도매시장내 불공정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별표 제4호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및 운영요령)중 제3조(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3 조 (구 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리사무소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계장이 된다.  
③ 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각 도매법인 대표 채소, 과일, 수산 중도매인 대표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5인이내로 하고 관계전문가, 시장종사자 및 출하주대표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기 정 안												
<p>제4조 (휴업일 및 개장시간)</p> <p>① (생 략)</p> <p>②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관련동 및 관리동은 20:00까지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th style="text-align: center;">개 장 시 간</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 과 부 류</td><td style="text-align: center;">03:00~12:0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 산 부 류</td><td style="text-align: center;">04:30~12:00</td></tr> </table>	구 분	개 장 시 간	청 과 부 류	03:00~12:00	수 산 부 류	04:30~12:00	<p>제4조 (휴업일 및 개장시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th style="text-align: center;">개 장 시 간</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 과 부 류</td><td style="text-align: center;">03:00~12:0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 산 부 류</td><td style="text-align: center;">03:30~12:00</td></tr> </table>	구 분	개 장 시 간	청 과 부 류	03:00~12:00	수 산 부 류	03:30~12:00
구 분	개 장 시 간												
청 과 부 류	03:00~12:00												
수 산 부 류	04:30~12:00												
구 분	개 장 시 간												
청 과 부 류	03:00~12:00												
수 산 부 류	03:30~12:00												
<p>제9조 (보증금 반환)</p> <p>시장은 도매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p> <p>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p>	<p>제9조(보증금 반환)</p> <p>-----</p> <p>-----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다만 -----</p> <p>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 (장려금의 지급)</p> <p>② 도매법인이 제1항의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할때에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의 장려금 운용계획과 지난 해의 지급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송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4조 (장려금의 지급)</p> <p>②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해당금액을 위탁상장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운용 계획에는 장려금의 지급대상, 지급 기준 및 요율과 그 지급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의 장려금이 도매법인간에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16조 (주주 및 임직원의 겸업제한)</p> <p>도매법인의 주주와 임직원 및 그와 동일호적내에 있는자는 당해 도매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판매업 또는 중도매업 등을 할 수 없다.</p>	<p>제16조 (주주 및 임직원의 겸업 제한)</p> <p>----- ----- -----판매업 또는 중도매업 등을 할 수 없으며 당해 도매시장에서 수집상 업무를 할 수 없다.</p>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 (경매사의 임면승인등)</p> <p>① (생 략)  <u>경매사의 해임 승인을 요청하여      야 하며 시장은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 임면에 대한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u></p>	<p>제17조 (경매사의 임면승인등)</p> <p>① (현행과 같음)  <u>경매사의 해임 승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이하삭제)</u></p>
<p>제20조 (경매사 확보)</p> <p>도매법인은 -----  -----</p>	<p>제20조 (경매사 확보)</p> <p>도매법인은 -----  -----      다만, 연간거래 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      (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에      의한 당해년도 예상거래량)에 의한다.</p>
<p>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p> <p>① (생 략)      나. 법인의 경우      (1) 정 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및 호적등본      (4) 신청당시의 당해법인의 대차      대조표</p>	<p>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p> <p>① (현행과 같음)      나. 법인의 경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시장이 정하는 서류</p>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부록) 95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p> <p>① 각 부류의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부 류</th><th>금 액</th></tr> </thead> <tbody> <tr> <td>청과부류</td><td>1000만원(법인1000만원)</td></tr> <tr> <td>수산부류</td><td>1000만원(법인1000만원)</td></tr> </tbody> </table>	부 류	금 액	청과부류	1000만원(법인1000만원)	수산부류	1000만원(법인1000만원)	<p>제27조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p> <p>(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thead> <tr> <th>부 류</th><th>금 액</th></tr> </thead> <tbody> <tr> <td>청과부류</td><td>1500만원(법인3000만원)</td></tr> <tr> <td>수산부류</td><td>1500만원(법인3000만원)</td></tr> </tbody> </table>	부 류	금 액	청과부류	1500만원(법인3000만원)	수산부류	1500만원(법인3000만원)
부 류	금 액												
청과부류	1000만원(법인1000만원)												
수산부류	1000만원(법인1000만원)												
부 류	금 액												
청과부류	1500만원(법인3000만원)												
수산부류	1500만원(법인3000만원)												
<p>②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월 미달 : 주의</li> <li>2개월 연속미달 : 경고</li> <li>3개월 연속미달 : 업무정지 15일</li> <li>6개월 연속미달 : 허가취소</li> </ol> <p>&lt;신 설&gt;</p>	<p>② (현황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월 미달 : 주의</li> <li>2개월 연속미달 : 경고</li> <li>3개월 연속미달 : 업무정지 15일</li> <li>3개월 연속 무실적 및 6개월 연속미달 : 허가취소</li> </ol> <p>제27조의 1 (시설사용면적 우대)</p> <p>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 법인과 중도매인 평가결과 우수자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p>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 (중도매업의 허가취소)</p> <p>시장은 중도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5.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도매시장 이외의 곳에서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수탁 또는 중개한 때</u></p> <p>6 ~ 9 (생략)</p> <p>제37조 (등록)</p> <p>① ~ ③ (생략)</p> <p><u>④ 수집상은 도매시장 출하 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38조 (등록취소)</p> <p>개설자는 수집상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u>3. 신설</u></p>	<p>제32조 (중도매업의 허가취소)</p> <p>(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6 ~ 9 (현행과 같음)</p> <p>제37조 (등록)</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38조 (등록취소)</p> <p>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1년간 연속하여 출하 실적이 없을 때</u></p>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p>제43조의 1 (도매법인 상장예외 품목거래)</p> <p>① 법 제2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20-1호 서식의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0-2호 서식의 상장 예외품목 거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의한 보증금 및 기타 상장예외 품목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 신 설 >	<p>제44조의 1 (출하자의 최저가격 제시)</p> <p>① 시행규칙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출하자가 최저가격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개시 이전에 제23-1호 서식의 출하자 최저판매가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u>&lt; 신 설 &gt;</u>	<p>② 제1항에 의한 최저가격 제시가 있을 경우 도매 법인은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매법인이 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출하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판매방식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제시된 최저가격 이하로 판매하였을 경우 차액은 법인이 지급한다.</p>
<p>제45조 (대량입하품, 표준규격품등의 우대)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경매실시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 3 (생략)  <u>4. (신 설)</u></p>	<p>제45조 (대량입하품, 표준규격품등의 우대)</p> <p>(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  <u>4. 표준 규격품의 팔레트 사용 출하품</u></p>
<p>제48조 (경매절차)</p> <p>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p> <p>-----          생략</p>	<p>제48조 (경매절차)</p> <p>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내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상 경매를 실시하는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p> <p>----- 이하 현행과 같음</p>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p><u>제51조의 1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u></p> <p>①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차이등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도매법인에게 가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도매법인은 제1항에 의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상장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을 적립하되 상장수수료 기준은 전년도 실적으로 하고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에 의한 당해년도 거래예상액으로 한다.</p> <p>③ 제2항의 적립금은 별도계좌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월말까지 그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의한 손실보전 신청이 있는 경우 도매법인은 판매당일의 동일품목, 동일품종, 동일규격의 당해시장 가격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되 출하자가 이에 이의가 있어 보전금 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전한다.</p> <p>⑤ 보전금 및 보전금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55조 (시설사용료)</p> <p>① 도매시장 - - - - - - - - - - 당해시설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 으로 하고 구체적인 납부 방법은 - - - - - 이하생략</p>	<p>제55조 (시설사용료)</p> <p>① 도매시장 - - - - - - - - - - 당해시설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중도매 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 하고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 - - - - 이하 현행과 같음</p>
<p>제61조 (부속업소의 설치) 도매시장 안에서는 도매법인, 중도매인등 거 래 관계자와 도매시장 이용자의 편 의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속 업소를 들 수 있다.</p> <p>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약국등 시장이 정하는 시설 2. 농수산물 잔품 및 관련상품 판매 시설 3. 기타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업소</p>	<p>제61조 (부속업소의 제한) - - - - - - - - - - - - - - - 이용자를 위한 다음각호에 제기한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p> <p>1. 일반 및 휴게음식점, 약국, 매점(슈퍼) 축산물 직판장 2. 양곡 및 가공식품 판매시설 3. (현행과 같음)</p>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p>제74조의 1 (하역업무)</p> <p>① 도매시장 하역업무는 도매법인이 하역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하역인부를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하역비는 전액 도매법인 부담으로 하며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p>						
〈 신 설 〉	<p>제75조의 1 (쓰레기 유발부담금)</p> <p>① 개설자는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 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품목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 포장규격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동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다듬기, 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쓰레기 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품 목</th><th>요 율 (원/톤)</th></tr> </thead> <tbody> <tr> <td>마 배 부. 대 양</td><td>5000 3000 700 500 400</td></tr> <tr> <td>양 배 부. 파 파</td><td>5000 3000 700 500 400</td></tr> </tbody> </table>	품 목	요 율 (원/톤)	마 배 부. 대 양	5000 3000 700 500 400	양 배 부. 파 파	5000 3000 700 500 400
품 목	요 율 (원/톤)						
마 배 부. 대 양	5000 3000 700 500 400						
양 배 부. 파 파	5000 3000 700 500 400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③ 부담금은 출하물량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승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매시장내에서 다듬기. 재포장 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발생 행위별로 개설자가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5만원으로 한다.</p> <p>④ 부담금은 개설자가 부과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하 중지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설자는 출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설자는 부담금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하자나 출하자단체에 대한 포장재구입, 포장재 구입지원사업</li> <li>2. 규격출하촉진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구입, 교육연구 사업</li> <li>3. 기타 규격 출하촉진을 위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⑥ 부담금의 부과, 징수, 사용 및 징수제외대상에 관한 세부내용은 개설자가 정한다.</p>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u>&lt; 신 설 &gt;</u>	<p><u>제77조의 1 (고충처리쎈타의 설치)</u></p> <p>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 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고충처리쎈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② 고충처리쎈타는 도매시장내 불공정행위와 도매 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p>
<p>(별표 4호)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제3조 (구성)</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u>10인이내의 위원, 간사 1인으로</u> 구성 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간사는 관 리사무소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매법 인, 중도매인 대표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3인이내로 하고 관 계전문가 및 시장 종사자중에서 시장</p>	<p>(별표 4호) (현행과 같음)</p> <p>제3조 (구성)</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관리사무소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계장 이 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 고 당연직 위원은 각 도매법인대표, 채소, 과일, 수산 중도매인 대표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5인 이내로 하고 관계전문가, 시 장종사자 및 출하주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